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제 회)	

국 군 인 쇄 창 령 전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법 제 처 심 사 를 마 칩

1. 의결주문

국군인쇄창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인쇄창의 명칭을 국방출판지원단으로 변경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과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맞도록 업무 내용을 개정하며, 부대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국군인쇄창령 전부개정령안

국군인쇄창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방출판지원단령

제1조(설치) ① 군 인쇄 및 출판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출판지원단을 둔다.

② 국방출판지원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제2조(업무) 국방출판지원단은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 전자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의 출판, 제작, 생산,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단장의 채용) ① 국방출판지원단에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영관급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출판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국방출판지원단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 (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정원) 국방출판지원단에 두는 군무원의 총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 소속 변경에 따른 군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군인쇄창의 군무원은 이 영에 따른 국방출판지원단 소속 군무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군 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 책임운영기관
국방출판지원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군 인쇄창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군인쇄창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6566